

飼料添加劑 移管에 대한 動物藥品 業界의 立場

□ 농림부령만을 개정하여 '사료첨가제'를 이관코자 하는 것은 법리상 무효

현재 사료협회와 관련 농림부 주무부서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료첨가제' 이관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 유력한 모 법률사무소에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결과 현행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료첨가제'를 농림부령만을 개정하여 사료로 분류코자 하는 것은 약사법에서 농림부에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사료첨가제'를 사료로 분류코자 한다면 사료업계 일부의 의견에 의하여 무리하게 부령 개정을 강행하기 보다는 먼저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사법 및 사료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사료첨가제'는 사료가 아닌 의약품

사료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 항균제, 비타민제, 아미노산제, 미량광물질제, 생균제, 효소제 등은 대한약전에 그 규격이 고시되어 있는 의약품으로서 단지 사료에 첨가된다고 하여 의약품이 원료사료 또는 보조사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에서도 동물용의약품은 사용대상이 동물일뿐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품과 성분·효능에 있어 구분되지 않는 동일한 물질로서 인체약품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으며 또한 '사료첨가제'는 동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 장내환경 개선을 통한 사료효율 증대, 정상적인 사료공급시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결핍물의 보충 등에 이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의 영양분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을 위해 식이의 의미로 사용되는 사료와는 엄격히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사료자체의 품질저하 방지와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보조사료와는 그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 되어지는 것으로 '사료첨가제'를 보조사료로 이관코자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주장인 것이다.

□ 사료의 경쟁력 저하가 사료첨가제 때문인가

사료업계에서는 동물약품 제조업체를 통해서 '사료첨가제'를 구입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비용이 증가되어 결정적으로 사료업계의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동물약품업체는 사료업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료업계의 실상을 알고 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만다.

사료업체 중에는 동물약품 제조업을 겸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들 업체는 필요한 '사료첨가제'를 전량 자체 생산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제 이들 회사는 자체 생산보다는 다른 동물약품 제조업체에서 '사료첨가제'를 더 많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왜일까? 자체생산 하는 것이 구입하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료업계 경쟁력 저하의 주요 요인은 동물약품 업체에서 공급하는 '사료첨가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여러 책자에서 밝히고 있듯이 높은 원료 수입 의존도, 비효율적 물류관리, 다양한 유통체계 및 대리점에 대한 높은 할인을 등에 있으며 사료업계가 진정 경쟁력 강화에 관심이 있다면 '사료첨가제' 이관 논의에 앞서 이러한 내부문제 개선에 먼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사료첨가제'를 이관코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 행위

동물약품제조업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대기업인 사료업계가 힘을 앞세워 업권확장을 기도하는 것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에서도 사료업계의 고유업종 침해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주무부서인 농림부에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 신중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들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가 IMF 체제에서 고통받는 것도 이러한 대기업의 행태가 크게 작용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다시 과거의 전철을 되밟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며 사료업계와 농림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사료첨가제' 이관은 한국 동물약품산업의 생존권적 문제

사료업계와 일부 농업 관련 단체에서는 이번 논쟁을 '기득권 유지'와 '업계간 잇권 다툼' 양상으로 몰아부쳐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동물약품업계가 무슨 기득권을 주장하고 무슨 잇권을 내세우고 있다는 말인가? 엄연히 현행 법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료첨가제'를 의약품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득권 주장이란 말인가? '사료첨가제' 입찰시 원료의 구매원장까지 제출하며 5% 정도의 마진을 갖는 것이, 그것도 현금이 아닌 3개월 어음으로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무슨 큰 이익이란 말인가? 동물약품 업체가 고장가동 및 종업원 고용 유지를 위해 마지못해 응하고 있다는 것은 사료업계 관계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동물약품 내수매출액 3,000억중 사료첨가제는 1,600억으로 4% 원이 훨씬 넘는 사료업계 매출액에 비하면 미미한 것으로 사료

업계에서는 몇 품 안되는 잇권의 문제이겠지만, 동물약품업계로 본다면 전체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만약 '사료첨가제'가 사료업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여러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파급영향이 미칠 것이다. 먼저 많은 국내 동물약품 제조업체가 폐업하게 될 것이며 결국 국내 동물약품 시장은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잠식되어질 것이다. 동물약품 제조업 피해화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손실과 동물약품의 수급 불안정, 종사자들의 실업사태가 예견되며, 아울러 다국적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동물약품 가격이 급등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도 수입제품의 가격이 국내제품에 비해서 월등히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다국적기업이 시장을 장악했을시에 약품 가격 급등은 당연한 귀결이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전적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사료첨가제' 이관으로 국내 동물약품 산업의 피해화 및 그 파급영향이 불을 보듯 예상되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모 농업 관련 단체의 주장처럼 비용절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하는 사료업계의 행위는 두둔할 일이고, 이에 대응하여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중소기업들의 노력은 기득권 주장으로 매도 당해야 할 일인지 모든 국민에게 물어보고 싶다.

□ 사료의 위생 및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먼저 마련

'사료첨가제'의 이관 논의에 앞서 일본의 '사료안전법'과 같은 법적·제도적 관리방안을 먼저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에 주 목적을 두고 있고 사료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는 부차적으로 다루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가축의 성장지연과 저질축산물(물알) 등 사료의 품질저하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농림부의 사료 수거 검사에서도 성분 부족 및 미검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이렇듯 사료업계의 품질관리 능력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료첨가제'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합당치 않은 처사이며, 이관 논의에 앞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사료업계의 품질관리 능력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사료관리법을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사료 자체의 품질관리도 미흡한 실정에서 무조건 '사료첨가제'를 취급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 □ '사료첨가제' 이관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직거래와 그 개념이 본질적으로 상이

사료업계에서는 '사료첨가제'를 실수요자인 자신들이 직접 취

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직거래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농업 관련 단체에서도 이에 동조하여 '사료첨가제'의 직거래를 주장하고 있다.

이쯤에서 새 정부가 내걸고 있는 직거래 정신의 본래적 의미를 살펴보자. 직거래 개념은 현재 농산물의 유통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많은 단순 중간유통 단계를 과감히 축소하여 생산비의 몇배에 달하는 기형적인 유통마진을 해소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직거래의 핵심은 여러 단계의 단순 유통단계 해소에 있다. 동물약품업체에서 현행 법에 의해 의약품인 '사료첨가제'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것이 과연 단순한 유통단계인가? '사료첨가제'의 유통을 가락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무우·배추의 유통과 동일시하여 직거래를 주장하는 사료업계의 저의는 무엇인가?

현행 법률에서는 '사료첨가제'를 동물용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료첨가제'는 공급자인 동물약품업체에서 실수요자인 사료업체로 현재에도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에도 사료업계에서 직거래를 운운하는 것은 법에 의해 의약품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는 '사료첨가제'를 의약품이 아닌 사료의 일종이라고 사료업계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데서 오는 억지일 따름이다.

오히려 직거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사료업계 내부에 있다고 할 것으로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단미사료니 보조사료니 하는 개념을 만들어 사료업체간 유통을 다단계화 하고 있으며 또한 사료 판매에 있어서도 다양한 경로를 거치고 있어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진정 직거래의 의지가 있다면 직거래를 내세워 무리한 업권신장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료업계의 내부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농림부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기대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사료첨가제 이관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동안 여러번의 논의과정을 통해 결정된 공정한 결과를 존중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관 검토 이전에 왜 이전과 같은 문제가 또다시 대두 되었는지 그리고 그 동안의 논의와 결정에 어떤 중대한 결함이 있었는지를 먼저 증명해야 할 것이다. 과연 몇 차례에 걸친 그간의 논의와 결정이 이렇듯 갑작스럽게 이관을 추진할 만큼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것인가?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료첨가제'의 소관 문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감사원 등에 회부되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현행과 같이 동물용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누차에 걸쳐 결정된 바 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공청회, 토론회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부령 개정을 통한 보조사료로의 이관이 논의 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축산농가를 위하여 사료업계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진실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